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4일, 고민정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6.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고민정 의원)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줄속 도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함. 그런데 국회와 학계에서 이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AI 디지털교과서만을 단독으로 선정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식만 허용됨. 다만, 병행 활용 역시 의무 사항은 아니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됨.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범위에는 교육 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 구입비만 포함되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구입·구독하는데 드는 비용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새롭게 명시된 저작물 및 교육감이 정한 자료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체계적 측면에서 다소 일관성을 더할 필요가 있음.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들은 교육부의 구체적 발표를 토대로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였음.

그러나 개정안의 경과조치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지위를 잃게 되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신뢰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조정훈, 서지영, 정성국, 김민전, 김대식 의원)

새로운 교육 기회 박탈과 경쟁력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활용되지 못한 점, 사교육 확대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법안에 유감을 표하거나 보류를 주장하며 대안 마련과 재조정을 요구

(김영호, 문정복, 김준혁, 고민정, 백승아 의원)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법안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책임과 대안 마련,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